

중소기업 경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제언

허 광 복*
박 희 우**
유 관 희***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적고, 회계보고서의 공시의 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회계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의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세법 중심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회계 실태 및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투명성도 자연스럽게 높일 것이다.

주제어: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비외감, 투명경영

1. 서론

IMF사태와 2001년 미국 엔론사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전체 산업체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¹⁾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스스로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어

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비상장사이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장 중소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중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으로 독립된 감사인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만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적고, 회계보고서 작성 및 공시의 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

논문접수일: 2012. 01. 13. 1차 수정본 접수일: 2012. 02. 16. 게재확정일: 2012. 02. 23.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전임강사(kbhur@dongduk.ac.kr), 제1저자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부교수(phwcpa@catholic.ac.kr),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khyoo@korea.ac.kr), 공동저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자본금 50억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의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고,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세법 중심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소유경영자의 지위에서 개인과 법인실체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경영 및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불투명한 행태는 한편으로는 수익의 누락, 비용의 과대계상을 통해 보고 이익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당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과세소득 상 이익은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중소기업의 역량과 의지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둘러싼 제도적인 문제점 또한 크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학회가 비외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회계기준원에서 제정·공표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의 실상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중소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 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회계 실태 및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상장기업 또는 비상장외감기업 중심으로 재무제표분석을 통한 실태분석을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비상장비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CEO, 실무담당자, 세무·회계전문가 및 금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

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기술한 후 제 III장에서는 연구의 설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 IV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제 V장에서는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 VI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서술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회계투명성의 정의

회계시스템이란 조직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내부 및 외부의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외부의 정보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투명성이란 물리학이나 광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은 상태 또는 빛을 투과시키는 물질의 특성을 말한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먼저 이남주(2002)는 투명성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평가되고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모든 거래, 계약, 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곽수근 외(2004)는 회계제도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투명성으로 구성되는 회계투명성 개념을 명시하고 이러한

〈표 2-1〉 회계투명성의 정의²⁾

회계정보 투명성	회계제도 투명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식 투명성
정보내용 - 정보의 적합성 - 정보의 정확성 - 정보의 충분성 - 처리방법의 적정성	내부통제시스템 - 시스템구조 - 시스템운영	기업지배구조 - 소유구조 - 전문경영체제 - 이사회운영 - 감사위원회운영 - 사외이사, 감사	경영철학 및 기업문화 사회적 책임 수행 자원배분결정기준 이해관계자 존중의식
정보공시 - 공시의 적정성 - 공시의 적시성 - 공시수단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 정보화수준 - 통합수준	기업경영공정성 - 거래의 공정성 - 납세의 성실성 - 활동의 적법성	
정보이용 - 이해관계자 - 정보분석가 - 정보평가자	회계조직 - 독립성 - 조직내위상 - 규모		
	감사제도 - 내부감사제도 - 외부감사인선임		

회계투명성은 경영투명성과 경영의식 투명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회계정보투명성의 하부속성으로 정보내용, 정보공시, 정보의 이용측면을, 회계제도의 투명성의 하부속성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정보시스템, 회계조직, 감사제도를, 경영투명성의 하부속성으로 기업 지배구조, 기업경영의 공정성을 그리고 경영의식의 투명성으로 경영철학 및 기업문화, 사회적 책임수행, 자원배분의사결정기준, 이해관계자의 존중을 제시하고 있다.

IMF(1998)는 투명성과 관련하여 기업투명성을 정의하고 있다. 기업투명성은 기존의 조건, 의사결정 및 행동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가시적이며 이해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적시성, 완결성, 일관성, 위험관리 및 감사의 통제과정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질 수 있다고 제

시하고 있다. 한편 Standard and Poor's(2002)에서는 투명성은 기업경영상 및 재정상의 이행과 기업 법인의 지배현황에 관한 충분한 공시의 시기 적절한 공개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2.2 회계투명성 관련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연구, 채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회계투명성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검증이 있다. Dechow et al (1995)이 제시한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재량적발생액(DA: Discretionary Accrual)을 이익의 질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2) 콕수근 외(2004) 연구에서 인용함

다. 이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재량적발생액과 회계이익의 질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량적 발생액이 높으면 회계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심상규(2007)는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의 비상장기업 중 22,818개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의 구간별 표본기업 분포를 도식하여 이익조정이 발생하는 구간을 살펴보고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을 종속변수로 부채비율, 소유구조, 재고자산 비중, 외부감사 수감여부, 세무서와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의 일치여부, 회계시스템 운영능력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상장 중소기업이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조정을 통해 흑자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익조정은 폭넓은 구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심충진(2006)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추정세액과 관련성이 낮으며, 재량적 유동 발생액 및 특별손익 변수만이 추정세액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배종일·심충진(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큰 집단의 경우 그 차이가 작은 집단에 비하여 차이이익 성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연승 등(2010)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로 측정된 이익조정행위와 부채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총 부채보다 단기금융부채가 많을수록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이익차이가 클수록 회계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

박종일·전규안(2009)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들이 3분기까지의 유효법인세율보다 4분기의 유효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경영자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이익조정이 크며, 회계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

김광윤·심충진(2011)은 중소기업의 회계실태분석 및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세제·제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4,260개를 기준으로 재량적발생액,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차이, 유효법인세율, 조세회피 등의 분석을 비상장외감기업과 비외감중소기업간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외감중소기업에서 이익조정이 많으며 회계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심상규(2007년)나 김광윤·심충진(2011) 등의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그 실태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상장 비외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분석이 아닌 CEO, 실무담당자, 회계세무전문가 및 금융기관 담당자 등의 설문을 통하여 재무제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파악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연구도 코스닥(KOSDAQ) 시장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은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상장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소수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진한 편이다.

기업이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이익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투명한 회계정보 공시에 따른 편익(Benefit)보다는 비용(Cost)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목적 이외에

재무제표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보다는 세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할 유인이 적을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화, 세계화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회계시스템이 대기업에 비해 불완전하며 회계정보의 작성능력 또한 부족하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와 회계담당자의 회계지식이 취약하여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투명성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므로 회계감사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설계

3.1 본 연구의 표본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실태

와 이슈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임원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 설문은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중소기업 중 총 628개 중소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 표본 628개사 중 83.9%에 해당하는 업체는 법인이며, 나머지는 개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표본에 대한 내역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중소기업의 소재지 분포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3.2 본 연구의 분석방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낮다는 주장이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1차적 작성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산 규모별 회계 담당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 내부이해관계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기준의 필요 요소와 더불어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경영투명성을 높일 경우 중소기업에 어떠한 혜택과 제도가

<표 3-1> 표본(분석대상 중소기업)의 형태분포

(단위: 사, %)

형태	법인	개인	전체
설문 중소기업 수	527	101	628
형태 비중	83.9	16.1	100.0

〈표 3-2〉 표본(분석대상 중소기업)의 소재지분포

(단위: 사, %)

소재지	업체수	비중
① 서울특별시	163	25.9
② 부산광역시	15	2.4
③ 대구광역시	26	4.1
④ 대전광역시	5	0.8
⑤ 울산광역시	13	2.1
⑥ 경기도	155	24.7
⑦ 강원도	36	5.7
⑧ 충청도	97	15.4
⑨ 전라도	45	7.2
⑩ 경상도	72	11.5
⑪ 제주특별자치도	1	0.2
총 계	628	100.0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IV. 한국 중소기업 실태조사

4.1 중소기업의 회계 인력 및 회계처리 현황

다음의 〈표 4-1〉은 중소기업의 자산 규모별 회계 담당 인력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명을 보유한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경우가 3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20억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담당 인력은 1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자산 규모가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 2명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 인력이 부족하며, 또한 회계 담당 인력이 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

〈표 4-1〉 자산 규모별 회계(경리) 담당 인력 현황

(단위: %)

자산 규모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총계
5억 미만	7.7	73.1	15.4	3.8	-	-	100.0
5억 이상 ~ 20억 미만	3.2	71.3	21.7	3.8	-	-	100.0
20억 이상 ~ 50억 미만	0.7	57.8	36.3	4.4	0.8	-	100.0
50억 이상 ~ 70억 미만	-	40.0	48.6	10.0	-	1.4	100.0
70억 이상 ~ 100억 미만	-	30.3	48.5	13.6	4.6	3.0	100.0
100억 이상	-	8.1	31.8	35.1	14.9	10.1	100.0
전 체	1.6	45.9	32.5	13.0	4.1	2.9	100.0

〈표 4-2〉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용도 현황

(단위: %, 사)

재무제표 작성용도	평균비중	응답수
㉠ 세무 신고용	100.0	628
㉡ 대출기관 제출용	52.5	
㉢ 거래처 제출용	32.2	
㉣ 정부 제출용(관급공사 및 정부자금조달)	35.5	
㉤ 기업 진단용	31.1	
총 계	100.0	

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작성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목적의 대부분은 세무 신고용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그 다음 목적으로 대출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52.5%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신고 및 대출 목적 이외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정부제출용(관급공사 및 정부자금조달용), 거래처 제출용, 기업 진단용 목적 순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세법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목적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세무신고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세무신고

방법을 살펴보는 것도 작성 담당자의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다. 다음의 〈표 4-3〉은 중소기업의 자산 규모별 세무신고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의 방법은 세무사에 의한 외부조정 신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약 90% 이상이 세무사의 도움에 의한 외부조정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클수록 회사 스스로 신고하는 자기조정 신고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조정 신고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세무사의 외부조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3〉 자산 규모별 세무신고 방법

(단위: %)

자산 규모	자기조정	외부조정 (공인회계사)	외부조정 (세무사)	총 계
5억 미만	1.9	5.8	92.3	100.0
5억 이상 ~ 20억 미만	1.9	8.3	89.8	100.0
20억 이상 ~ 50억 미만	8.9	8.9	82.2	100.0
50억 이상 ~ 70억 미만	10.0	11.4	78.6	100.0
70억 이상 ~ 100억 미만	22.7	16.7	60.6	100.0
100억 이상	29.1	23.6	47.3	100.0
전 체	12.9	13.1	74.0	100.0

〈표 4-4〉 중소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단위: %)

구 분	상당한 수준	보통 수준	미약한 수준	전혀 모름	총 계
대표이사	12.1	39.4	45.5	3.0	100.0
임원	27.1	60.4	12.5	0.0	100.0
회계담당자	23.1	59.9	15.9	1.1	100.0
전 체	22.8	58.9	17.2	1.1	100.0

4.2 중소기업 내부이해관계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 및 애로사항

앞에서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 인력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대부분의 회계 인력이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회계 외의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의 〈표 4-4〉는 중소기업 내부이해관계자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미약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8.5%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회계 지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회계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회계인력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23.1%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

는 회계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이들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소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의 〈표 4-5〉와 같다.

중소기업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중소기업 거래의 현실에 비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용할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법 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가 많다는 것이 25.2%로 나타났다. 법인 형태를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적용할 항목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개인 형태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대기업 및

〈표 4-5〉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단위: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법인	개인	전체
㉠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19.2	33.8	21.5
㉡ 적용할 항목이 너무 많다	37.5	28.4	36.0
㉢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16.0	24.3	17.3
㉣ 세법 기준과 차이가 많다	27.3	13.5	25.2
총 계	100.0	100.0	100.0

상장기업을 위주로 제시되어 중소기업의 회계인력 현황과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 내용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MF 금융위기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겪어졌던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동일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사회로의 진입에 상당한 장벽이 되며, 중소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인력도 부족하고 최고경영자와 회계담당자의 회계 지식도 낮다. 이에 비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대기업과 상장기업을 위주로 제시되므로 중소기업의 실상을 반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별도로 도입한다면 어떠한 요소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다음의 <표 4-6>과 같다.

향후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된다면 가져야 할 중요 요소로 적용이 간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의 경우 세법과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개인 형태의 중소기업의 경우 이해가 쉬워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높게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무조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회계를 이해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제시와 제도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 기업과 달리 공시의 의무가 낮다. 기업의 회계정보를 제시하는 재무제표가 중소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금융기관, 거래기업 등의 관련 기관에 공유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회계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되거나 관련 기관에 공유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및 공유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쟁회사에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을 가장 높은 87.4%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세금 부담의 증가도 회계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표 4-6>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가져야 할 중요 요소

(단위: %)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가져야 할 중요 요소	비율		
	법인	개인	전체
㉠ 이해용이성	17.8	32.7	20.2
㉡ 적용간편성	30.6	31.7	30.7
㉢ 중소기업 실상 반영	24.3	24.7	24.4
㉣ 세법과의 일관성	27.3	10.9	24.7
총 계	100.0	100.0	100.0

〈표 4-7〉 회계정보 공시 및 공유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회계정보 공시 및 공유의 반대 이유	비율
㉠ 세금부담의 증가	5.0
㉡ 상속 등에 있어서의 장애	1.3
㉢ 기업에 대한 지배력 약화	3.1
㉣ 경쟁회사에 정보노출	87.4
㉤ 개인적 자금 사용의 어려움	1.3
㉥ 협력업체 계약 상의 불이익	1.9
총 계	100.0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대기업과 상장기업과 달리 공시 및 공유에 있어 중소기업의 보호와 더불어 신중하게 병행되어야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V. 중소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 개선 방안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맞춘 회계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제고될 수 있다.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으로는 외부감사제도, 공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환경으로는 상법상 내부감사제도, 기업의 회계시스템, 경영자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의지 등이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대기업과의 경쟁, 자금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역할에 걸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사회

의 요청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므로 회계감사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더불어 중소기업 실무진 및 회계전문가 의견 및 관련 해외 사례 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5.1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환경 개선 방안

중소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5.1.1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도입

현재에도 기업회계기준에 중소기업특례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간소화된 기준이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많고 복잡한 회계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이 소화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에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회계기준을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별도의 중

소기업 회계기준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장부작성 부담을 줄이고 회계를 통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약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경우 불투명한 세상에서 투명성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형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계기준의 보급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의 검토나 현재 상장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중소기업의 입장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정하여 도입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정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투명한 회계제도의 정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다.

5.1.2 회계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장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외부의 기장대리인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회계지식이 없거나 낮은 중소기업인들은 생존을 위한 경영활동에 전념하느라 재무제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경쟁심화에 따라 투명한 기장보다는 의뢰자의 요구에 맞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전문가에 대한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실기장 대

리인을 선정하여 업무의 확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부실기장 대리인을 적발하여 제한적인 업무제한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부기장 전문가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장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5.1.3 중소기업 회계정보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기존에 중소기업이 투명하지 않았던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제대로 공시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경우 경쟁회사에 대한 정보 누출에 대한 문제점을 보호하는 장치가 더불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그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아니라 경쟁회사 등에 대한 정보노출로 인한 사업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결과다. 이를 해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5.1.4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인센티브의 제공

향후 중소기업의 투명성 준수를 실행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관련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이 과거의 관행대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지켰을 경우의 한계비용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한계효익을 밀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당장 이와 같은 효익을 전부 상쇄할 만한 우대방안을 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우대조치, 정부기관(국세청 등)의 세제 혜택 및 정책자금 우대조치 등의 제도가 병행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상위 상대 거래업체로부터의 우대조치 등이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중소기업 투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증빙불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세당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증빙불비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 양식 및 근거를 제시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함과 동시에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반을 먼저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5.1.5 중소기업의 무자료 관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도입

흔히 중소기업의 증빙이 믿을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고민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증빙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도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거래의 경우 장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는 실무적 관행으로 매출누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반대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대인이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 임차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제대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제대로 된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빌미로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약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마냥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 측면에서 비용이 누락되어 회계적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임대인 측면에서는 수입이 누락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많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하여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고 매입증빙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매입자인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적인 거래의 중단 내지 피해를 보면서까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좀 더 세심하고 접근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지출이 발생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5.1.6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를 자발적 수행 시 혜택 부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정부는 외부감사비용에 대한 혜택을 보조하고 금융기관은 외부감사 수입 시 신용등급을 높여줌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회계투명성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한다면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환경 개선 방안

앞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환경 개선방안으로서의 제도는 중소기업 내부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토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투명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내부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5.2.1 중소기업의 회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내부이해관계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다. 따라서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행적으로 중소기업 회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교육기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회계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2.2 중소기업 전용 회계프로그램의 제공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기장대리인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지식이 없거나 낮은 중소기업 인들은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영활동에 전념하느라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의 마련과 더불어 이를 현장에 배포하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회계담당자가 이를 내부 관

리회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2.3 가사 경비와 법인 경비의 구분을 위한 자발적 노력

현재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법인(회사) 경비를 가사(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줄이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예금, 유형자산 등)을 가공으로 표시하는 가장납입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사용내역을 최대한 명확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한 가공급여 및 복리후생비, 또는 회사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유흥비 등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제고와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과거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2.4 중소기업 회계인력 보강을 위한 제도의 운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회계인력이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회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회계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전에 회계인력이 전문적으로 중소기업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양성될 수 있는 인력 보강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VI. 결론

최근까지 중소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해당 관계기관 및 중소기업 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외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굳어졌던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이 그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적고, 회계보고서 작성 및 공시의 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의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고,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세법 중심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소유경영자의 지위에서 개인과 법인실체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경영 및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실태를 재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 인력이 부족하며, 이들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의해 병행 처리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가장 및 세무 신고는 회사 스스로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

가에 의해 외부 기장되거나 조정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내부이해관계자인 최고경영자와 회계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이 소화하기에는 항목이 너무 많고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을 위한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투명성 확보 시 경쟁회사에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이 소화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별도의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마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회계장부 작성 부담을 줄이고 회계를 통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기장 대리인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회계를 담당하는 외부 회계전문가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실천에 따른 정보 누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경쟁회사 등에 대한 정보노출에 따른 사업 피해 우려를 해결하는 장치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 노력을 실천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세제우대,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효익)가 투명성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기반이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무자료 관행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여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이를 세심하게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회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회계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회사 경비와 개인 경비를 구분할 수 있는 자정 노력과 계몽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 회계인력 보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 이외에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회계적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계, 재무제표 활용 기관,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할 때 지금까지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일부 소규모 기업들이 정상적인 회계시스템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계 전반의 회계투명성도 높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수근·황이석·이우중·심호석(2004), "회계투명성평가에 관한 연구-한국회계학회의 투명회계대상을 중심으로," **경영논총**, 8, 37-71

김광윤·심충진(2011),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

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박종일·전규안(2009),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34(1), 171-206

배종일·심충진(2009),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차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이익성장성과 주가 수익률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6(1), 169-197

손언승·양동훈·김갑순(2010),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로 측정된 이익조정 행위와 부채와의 관련성," **조세연구**, 10(1), 258-292

심상규(2007),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중소기업연구**, 29(4), 215-236

심충진(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3(4), 9-27

이남주(2002), 회계투명성과 회계제도의 개선, **상장협 제 6호**, 110-122

이윤보·노화봉(2006),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 **중소기업연구**, 28(3), 329-379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Dechow, P. M., A. Sloan, and P. Sweeny(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Standard& Poor's(2002), "Transparency and Disclosure Study"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n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wangbok Hue* · Heewoo Park** · Kwanhee Yoo***

Abstrac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do not receive the external audit have fewer interested parties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lower mandatory disclosure of financial reports than the large companies do. Therefore the voluntary effort for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E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ir lack of accounting capacity and the accounting treatment for tax purposes leads to low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accounting conditions of SMEs without external audits and suggests the ways of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by separating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nternal environment.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for SMEs, future SMEs-related institutions will act as accelerators for the stable and transparent growth of SMEs, and the overall efforts by the management of small business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SMEs' accounting transparency.

Key Word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counting and Management Transparency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du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